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2호 (2020-13)
발행일 2020. 04. 23.
ISSN 2092-7117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집호 ⑩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여유진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김성아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종합적인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 우선순위는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한 피용자와 자영자에게 재가하기까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에 두어야 함.
- 또한 감염병예방법, 사회재난 구호 관련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 간 우선순위, 중복수급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하고, 전달체계도 보강되어야 함.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적·경제적·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난 관리 및 지원 통합 포털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전후로 자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심리적 방역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01. 들어가며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3월 11일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함.

- 세계 각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봉쇄, 지역 간 이동 차단, 확진자 분류 및 의료적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단기간 내에 종식되기 어려우며 그 여파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음¹⁾.

- 그 영향이 공급·수요·금융 부문의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물경제부진→금융시장악화→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임(국회입법조사처, 2020.).

◆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도약하였음.

- 하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핵심 근로계층까지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에 대응한 보건의료적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대응과 심리적 방역이 체계적으로 구축·추진되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여 명으로 전월 대비 3만 1000여 명 증가하였으며, 수혜금액은 약 9,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고용노동부, 2020.4.13. 보도자료).

- 특히, 위기 시의 지원은 지원의 타이밍(신속성)과 적절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정부 역시 3차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정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실업 근로자, 취약계층에 대한 생업 지원과 생계 지원 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더불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계획하고 있음.

-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소득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의 원칙과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 등을 점검해 보고자 함.

02.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외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

◆ 국내외 코로나19 대응 긴급 소득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

- 아래 <표 1>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책을 일별로 제시해 놓은 포털(www.oecd.org/coronavirus/en/#country-profiles)에서 추출하여 정리한 주요국의 긴급 소득지원 대책들임.

◆ 이들 대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진행에 따라 수차에 걸쳐 종합패키지 형식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 규모는 작게는 GDP의 2~3%에서 크게는 GDP의 18%(영국)에 이룸.
 - 유럽과 미국 모두 우리나라보다 늦게 코로나19 대책이 추진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후에도 추가 지원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 둘째, 긴급 소득지원 대책은 크게 고용 유지와 실직 방지를 위해 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과 상병급여, 실업급여, 저소득층 소득지원, 각종 바우처 제공 등 개인과 가구에 직접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두 대책을 병행하고 있음.

1)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가 올 하반기에 소강상태에 이르더라도 올해 세계 경제는 -3.0%, 한국은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뉴시스, 2020.4.14.).

- 셋째,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모두 기존의 경제활동 지위(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둬으로써 실직과 휴·폐업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피용자에게는 상병급여, 자녀돌봄 휴직급여 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피용자의 해고를 막는 대신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함.
 -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분의 일정 비율 보전, 면세나 납부 유예 등을 해 주고 정부 보증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음.
- 넷째, 특히 기존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1, 2차 사회안전망-예컨대, 상병급여, 실업급여, 사회부조급여,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등-을 우선적·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제도의 자격조건, 수급기간, 급여액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
 - 스웨덴, 프랑스 등은 상병급여와 실업급여 완화 전략, 영국은 유니버설 크레딧, 독일은 사회적 지원(사회부조)의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에 중점을 둬.
 - 영국은 공공부조 수급대상이 아닌 자영자를 한시적으로 유니버설 크레딧 수급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독일은 사회부조 재산기준을 일시 완화하였음. 미국은 기존에 실업보험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나 깃(gig)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실업부조를 실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기존 사회안전망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국과 한국은 재난 기본소득 형태의 소득지원이 추진되고 있음.
 - 미국은 일정 기준(threshold) 이하 소득을 가진 성인에게 1200달러, 아동에게 500달러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할 계획임.
 - 한국은 지자체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또는 전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였음.

표 1.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국의 긴급 소득지원 대책(요약)

국가명	정책방향	개인과 가구에 대한 (직접)지원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스웨덴	GDP의 약 13%(621억 달러)에 이르는 종합패키지 발표	- 상병급여 대기기간 일시중단(4~5월) 및 급여 전액 정부 부담 - 실업보험 임시강화: 자격조건 완화 및 최고·최저액 인상 -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보조금 받는 일자리의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창업지원 최대기간 연장, 청년 일자리 및 녹색일자리 확대, 직업훈련·교육 확대 - 학생지원소득 한도 일시 해지(특히, 의료분야)	- 단기해고제도입(3.16): 정부보조금을 통한 일자리 유지(임금의 90%이상 수령) -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인두세, 부가가치세 최대 12개월 유예 - 별도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3.20): 자금 추가대출, 정부 신용보증 확대, 문화사업 수익 감소에 대한 지원 등
독일	바이러스 확산 지연 및 경제 보호를 위해 1조 유로(추정 1560억 유로 포함) 넘는 자금 확보	- 사회급여(사회법 제2권 제2호(SGB II)에 따른 구직자에 대한 기초생계지원, 사회법 제12권 제2권 제2호(SGB XII)에 따른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이 6개월간 완화되며 자산과 아파트 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 소득을 상실한 부모는 한시적으로 아동수당(Kinderzuschlag) 혜택	- 단축근로계획: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월 순이익의 60%를 보상하는 것 외에 손실된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의 100%도 보상 - 10인 미만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1만 5000유로까지 지원

국가명	정책방향	개인과 가구에 대한 (직접)지원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프랑스	국가 및 지역 당국 간 위 기 관리를 위한 공동행동/ 조정 계획 수립. 가게 및 기업 지원 패키지(GDP 의 0.7%, 165억 유로), 세 액공제 조기환급(GDP의 2.0%, 485억 유로) 등	- 휴교 중인 근로자,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병가환 급금 증액 - 실업급여 연장(실업보험 개혁 일부 연기) - 사회권 확대(최소 복지혜택, 장애인 혜택) - 구매력 보너스 지급 조건 완화	- 단축근무제도 사용 장려: 근로자는 총급여의 70%, 최 저임금 근로자는 100% 수령 - 사회보장기여금·세금 납부 연기, 사례별 면제 인정, 필 수업종 상여금 면제 - 연대기금을 통한 자영업자 및 기업인 소득 지원
영국	일자리 유지계획 및 소득 지원 등을 위해 4015억 파운드(GDP의 18.1%) 재정 패키지 발표(정부 대 출, 부가가치세 납부 연기 등은 제외된 비용)	- 자영업자를 위한 유니버설 크레딧(UC) 적용(3월 20일): 향후 12개월 간 수당을 1000파운드까지 상향, 최저소 득기준 적용제외 - 법정 병가 휴직급여 대기기간 폐지 - 개인소득세 납부 유예(2021년 1월 31일까지)	- 3월 20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 고용주는 유지 근로자 급여의 80%를 충당하기 위해 매달 2500파운드까지 보조금 신청 가능 - (평균수익 5만 파운드 미만) 자영업자에게 3년간 종전 수 익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보조금(2500파운드까지) 제공(6월부터 최소 3개월)
미국	83억 달러의 긴급 지출 법안 및 1080억 달러 가 치의 후속법안 의회 통과, CARES법은 약 2조 달러 (GDP의 9%)의 비용 부 담.	- 일차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가족지원법: 코로나바이러스 무료 검사, 2주간 유급 병가, 최대 3개월의 유급병가 제공. 주정부의 실업보험금 지원, 주정부 메디케이드 지원 - 가정과 기업 지원을 위한 CARES법: 기준소득 이하 가 구에 대해 성인 1인당 1200달러, 아동 500달러 직접 지원, 실업보험의 급여액 증액, 급여대상 확대(자영업자, 직노동자), 급여기간 연장(26주에서 39주까지로), 연 방학생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 연기	- 모든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 피해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급여 세액공제 50%
일본	2019년 12월 5일 시행 경기부양책(7조6000억 엔, GDP의 1.4%)에 더하 여 2020년 3월 10일 제 2차 4308억 엔의 정책패 키지 제시	- 자녀의 휴교 및 휴원에 따른 부모의 휴직 지원(3월 10일) -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개인 및 기업의 세금 납부 연기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별유급휴가 비용의 각각 2/3과 1/2을 부담하는 고용조정교부금 지원 자격 완화(2월 14일),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 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률을 9/10과 3/4로 상향조정 -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개인소득세, 증여세, 소비세 납부 기한 연장(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국	- 총 141조원(GDP의 7.4%) 의 지원책 발표 - 3월 17일 11조7000억 원(GDP의 0.6%) 추경 예산 승인 - 3월 24일, 지역사업 활 성화, 가게 및 기업 지원 을 위해 100조원 추가 재정지원책 발표	- 빈곤층을 위한 소비쿠폰 - 긴급가족돌봄 -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시행 혹은 도 입 논의	- 고용유지지원 -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소상공인 임금·임대 간접지원

자료: oecd.org(<http://www.oecd.org/coronavirus/en/#country-profiles>: Key country policy reponses: Country policy tracker, Updated on 2020. 4. 5.)를 참고로 정리

◆ 국내 코로나19 대응 긴급 소득지원 관련 대책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부는 예산 총 32조 원에 달하는 1~3단계 총력지원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3.18.).
- 1단계(2.5~2.20)는 주로 업종·분야별 긴급지원(4조원), 2단계(2.28)는 행정부와 유관기관의 독자적 패키지 지원(16조원), 3단계(3.17. 국회통과)는 11.7조원의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가구 지원의 주요 정책 패키지는 <표 2>와 같음.

- 이러한 대책과는 별도로 정부는 하위 70% 이하 가구 또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음.

표 2.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 긴급지원 대책

대상	지원내용	지원인원(개소)	혜택
① 저소득층	소계 (중복제외 추계)	484.5만 명	• 117~149만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68.7만 가구 (230만 명)	• 108~140만원 (4인 가구, 4개월분)
	건강보험료 50% 경감(하위 20%)	511.6만 명/세대	• 9.4만원 (3개월분)
② 소규모 사업장	소계 (중복제외 추계)	80만 사업장	• 161.7만원 (사업주 기준)
	인건비 부담 경감	80만 사업장	• 최대 288만원 (인당 4~7만원 추가, 4개월간, 4인)
	금융지원	총 12조원 규모	• 업체당 최대 3천~1억 원 한도
	부가세 경감	133만 업체	•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평균 60만원 • (간이과세자) 평균 12만원
	임대료 경감	추정곤란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 50% 세액공제
③ 위기가구· 피해점포 등	소계 (중복제외 추계)	134.4만 명	• (점포) 100~300만원 • (실직) 123만원 × 6회 (4인 가구) • (고용유지) 189만원 × 6개월
	긴급복지	134.4만 명	• 123만원 (1회, 4인 기준)
	피해점포 지원	19.8만 점포	• 300만원 (확진자 경우) • 200만원 (폐업) • 100만원 (장기휴업)
	고용유지지원금	30만 명	• 월 126만원씩 6개월 (월소득 200만원 기준)
④ 7세미만 양육가구	특별돌봄쿠폰	263만 명	• 40만원 (4개월분)
⑤ 노인가구	노인일자리 쿠폰	54.3만 명	• 23.6만원 (4개월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3. 30.)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03.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에 대한 점검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소득지원 대책을 몇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점검해 보고자 함.

◆ 위기 대응성 및 예방 중심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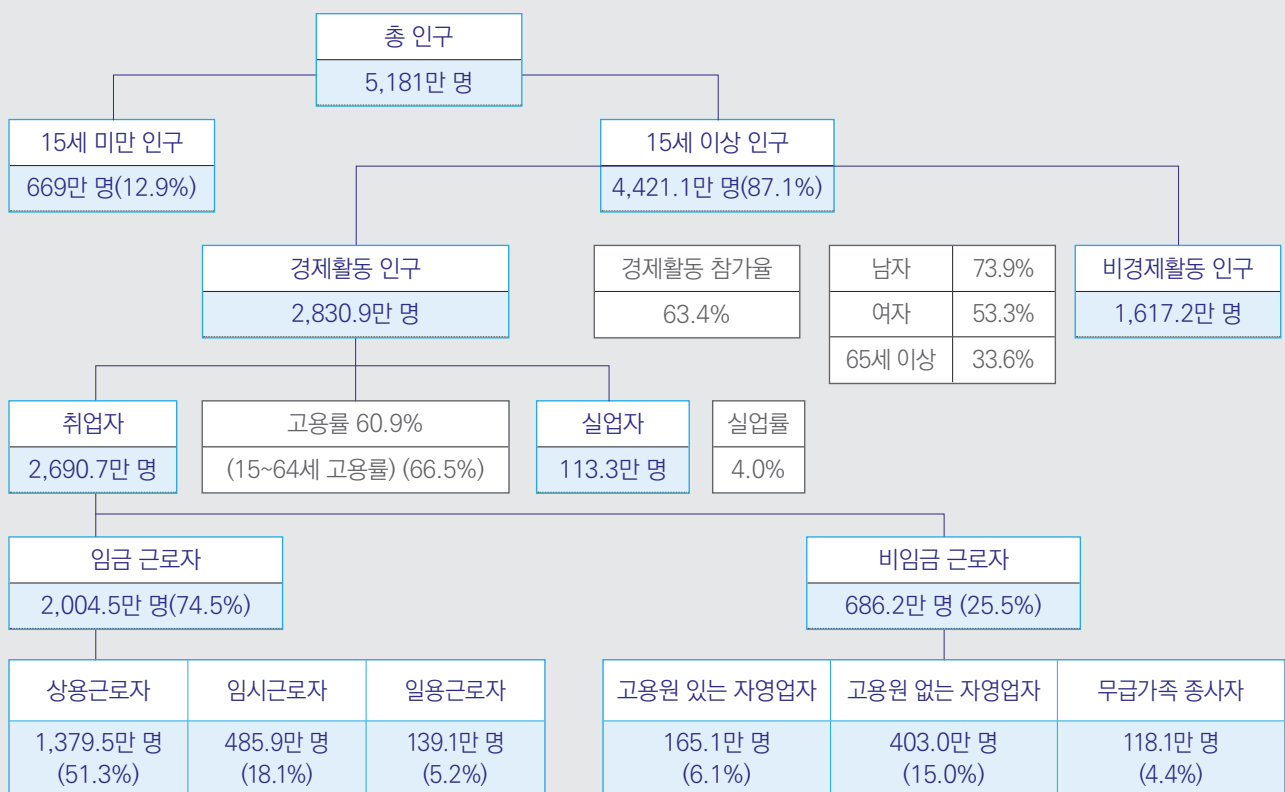
- 전염병을 극복하기까지의 경제적 손실은 피할 수 없음. 다만, 질서 있는 회복을 위해서 IMF는 예방적인 재정적 처방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0. 3.; 국회입법조사처, 2020. 4. 재인용)
 - 즉, 정부는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는 동안 폐업의 위험에 노출된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를 통해 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파산 및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여 향후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

- 1~3차에 걸친 재난 지원 대책도 위기 대응성 및 예방 중심적 접근에 부합하는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음.
 - 재난에 대한 지원의 일차적 우선순위는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 · 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 · 폐업한 피용자와 자영업자에게 재기하기까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에 두어져야 함.
 - 하지만 현재의 지원 대책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재난의 규모와 범위에 비해 피해 기업과 점포에 대한 지원의 대상 규모, 지원액, 지원 기간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가 하반기에 종식 내지 안정화되더라도 경제적 파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일자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임.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과 기존 안전망의 취약성을 고려한 대책 구상

-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특성상 몇 가지 점에서 현재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됨.
 -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영세자영업자와 비정형근로자의 비중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25.5%에 이르며, 취업자 중 임시 · 일용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3.3%에 이름.

그림 1. 경제활동인구현황(2018. 8.)



자료: 통계청의 고용동향(2018.8 현황)과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바탕으로 자체 계산(www.kosis.kr, 2018. 9. 12. 인출)

- 또한,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8%(주민등록인구 기준, 2020년 3월)²⁾로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노인 빈곤율이 42%(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 50% 기준, 2018년)³⁾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노인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비율도 33.1%(2020년 2월)⁴⁾에 이릅니다.
- 요컨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잠재적 불안정 근로계층의 규모가 큼.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기존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기존 사회안전망은 일상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기제지만, 위기 시기에 더욱 유효한 안전망이자 '자동안정화 장치'이기도 함.
 - 특히, 유럽 복지국가들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보다는 기존 상병급여, 실업급여, 사회부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활용하되, 자격조건, 대상, 수급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병급여제도가 부재하고, 불안정 취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사각지대도 상당히 넓다는 점에서 이를 한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요구되는 상황임.
 - 긴급 일자리 보조금 지원, 한시적 실업부조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등 공공일자리의 대폭 확대 등이 긴급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의 예임.
 - 코로나19에 대응한 대상유형별, 자원유형별 긴급지원의 구상도는 아래 <표 3>과 같음.

표 3.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지원 패키지 분류도

구분	예방적·기업(자영자) 중심	사후적·가구 중심		
대상 유형	생계수단의 유지, 확보 (일자리 유지 또는 재기)	직접적인 선별적 생계지원 (위기가구 대응)		(준)보편적 생계보조
실업(위험) 근로자	임금보조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한시 실업부조 공공일자리 및 자활사업 연계	재난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재난기본소득 소비쿠폰
휴·폐업, 영업손실 자영자	금융지원(저리대출 등) 사회보험료 감면 세금 감면(유예) 전기료 감면 피해 휴·폐업 점포 재개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 긴급 소득지원제도 간 상호 관계 정립 및 전달체계 보강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 시의 긴급 소득지원제도는 「감염병예방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근거 법령에 따라 주관 부서, 자원, 전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체계와 관계를 정립하여 질서정연하게 선정과 급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3(2020. 4. 15 인출)

3)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3(2020. 4. 15 인출)

4)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2020. 4. 15 인출)

-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사회재난 구호」 규정에 따라 일차적으로 긴급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장, 업소, 가구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일차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이들 양 법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가구와, 이들 법에 근거한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4 감염병예방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의한 지원의 법적 근거

구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시행) 연도	2009.12.29.(2010.12.30.) 개정 전 법률(전염병 예방법)	2015.11.30.(2016.6.1.)	2005.12.23.(2006.3.24.)
주관부서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위기 사유 (지원 대상)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 병원체 등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통행차단 등(제47조제1호),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제47조제3호)함으로써 생업이 어려운 사람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재난 피해 주민(주소득자의 사망·실종·부상으로 인한 소득상실, 농림어업 및 염생산업 피해 등)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실직 등 (신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2020.4.6. 보건복지부고시))
급여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제64조제6호)	생활안정지원(생계비지원, 주거비지원, 수업료면제), 간접지원(용자, 이 자지원 세금·사회보험료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피해수습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지원
전달체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특별재난지역(지자체)	보건복지부(지자체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비고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타법률우선원칙(제3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해당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추경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2000억 원 추가 배정됨에 따라 총 예산 3656억 원이 확보됨.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2020. 4. 6.)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추가 위기 사유로 지정함.
 - 또한 긴급지원의 일반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하고, 금융재산 공제액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함.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 사유 신설과 재산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점에 대해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
 -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기준에서 거주주택과 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이나 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업, 휴·폐업 등으로 인해 급격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 이와 더불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선 담당 인력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긴급지원에서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

- 연일 코로나19에 대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은 취약한 실정임.
 - 현재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 “대상별 피해지원 정책”으로 들어가면 일반인(대국민)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대책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함.
 - 하지만 해당 포털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다, 제공되는 정보도 수요자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각국은 코로나19 재난 시 이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공식 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 (호주) “Covid 19 benefits in Australia”를 키워드로 한 구글 검색 첫 페이지에서 공식 정부 홈페이지 접근 가능 → 사회서비스부의 총괄페이지 접속 가능
 - 왼쪽 메뉴에 이용할 수 있는 기금, 수당, 자영업지원제도, 관련 법령 등을 소개
 - (미국)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재난 구호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⁵⁾
 - 대문화면에서 ‘지원제도 찾기 페이지(Find Assistance)’ 클릭하고, 재난을 경험한 개인이 일련의 질문에 따라 경제·사회적 특성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목록이 검색되고, 온라인 신청 방법과 서류 목록이 제시됨.
 - (영국) ‘Covid 19 assist in the u.k.’를 키워드로 한 구글 검색 첫 페이지에서 공식 정부 홈페이지 접근이 가능하며, 상황별(사업가 혹은 임금근로자/고용주 등) 관련 페이지 접근이 용이함.
 - 첫 번째 검색결과(COVID-19: support for businesses-GOV. UK)를 클릭하면 사업자 관련 영국 정부 공식 페이지에 접속 가능.
 - 두 번째 검색결과(COVID-19: support for employees, employers and...-GOV. UK)를 클릭하면 임금근로자 및 고용주 관련 영국 정부 공식 페이지에 접속 가능.
- 대상별(사업체, 자영자, 취업자, 실업자, 취약계층 등)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 지원자격, 지원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포털을 개설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긴급지원제도와 국민 간의 물리적·시간적 간극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포털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심리적 방역과의 연계 강화

-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 위험 간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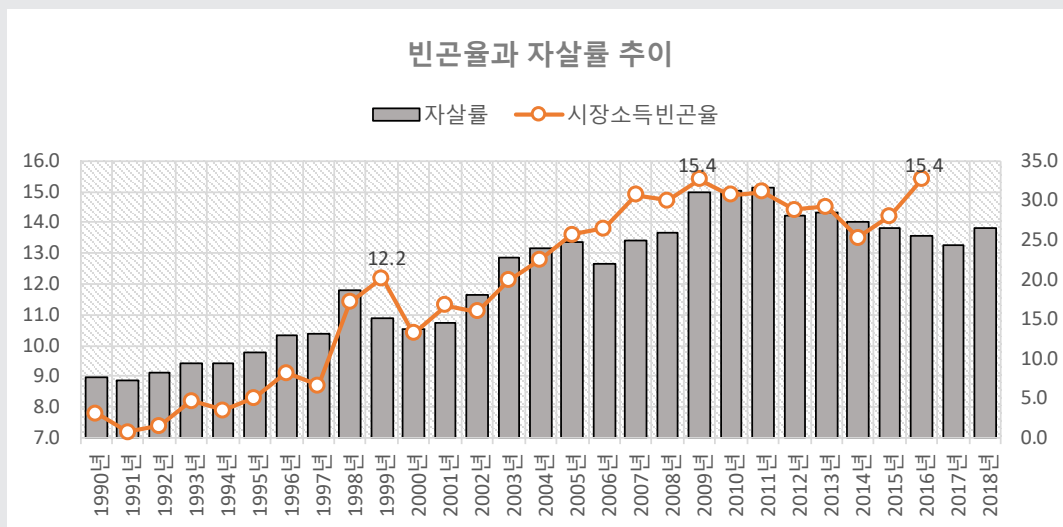
5) <https://www.disasterassistance.gov/>(2020. 3. 23. 인출)

-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빈곤율이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자살자 수도 크게 증가함(그림 2) 참조).

- 예를 들면, 25~64세 인구 중 자살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피크 시점에 전년 대비 2094명 증가한 6424명에 이르렀으며, 2008년 금융위기의 정점에는 전년 대비 1884명 증가한 1만 254명에 이름.

- 특히 실직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고와 부채 등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가하는 생애 사건임.
- 긴급 소득지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대책과 더불어 정신건강, 자살예방 대책 등 심리·사회적 대응책을 보강하고, 이들 간의 적극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함.

그림 2. 빈곤율과 자살률 추이



자료: 자살률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2020.3.24. 인출); 빈곤율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3(2020. 4. 12. 인출)

04. 나가며

◆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분명 우리나라의 감염병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교훈을 준 사건임.

- 향후에도 자연적 재난, 감염병 출현, 주기적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는 반복될 수 있음.
 - 지난 메르스 사태의 교훈으로부터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건·의학적 방역을 넘어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방역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함.
-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예컨대, 상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은 위기 시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보장제도 정비를 통해 불안정 노동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탄탄하게 정비해야 할 것임.

- 감염병예방법, 사회재난 구호 관련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 간 우선순위, 중복수급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하고 전달체계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난 관리 및 지원 통합 포털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보강하고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심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전후로 자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심리적 방역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0. 4. 13.).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3. 30.)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관계부처 합동(2020. 3. 30.).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0. 4.).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기획재정부(2020. 3. 17.). 코로나19 파급영향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보도자료.

기획재정부(2020. 3. 18.). 「'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뉴시스. (2020. 4. 14.). IMF “올해 세계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한국 성장률-1.2% 제시.

보건복지부. (2020. 3. 17.).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73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안(<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에서 2020.4.6. 인출)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2020. 3). Policy Steps to Address the Corona Crisis, 2020. 3.

경제협력개발기구. <http://www.oecd.org/coronavirus/en/#country-profiles>: Key country policy responses: Country policy tracker, Updated on 2020.4.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미국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재난 구호 홈페이지. <https://www.disasterassistance.gov>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3에서 2020. 4. 12. 인출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3에서 2020. 4. 15 인출

통계청 사망원인(103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수, 사망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에서 2020.3.24. 인출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에서 2020. 4. 15 인출

통계청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3에서 2020. 4. 15 인출

집필 여유진(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김성아(소득보장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문의 044-287-8181